##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					
접수번호	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20일	
제출인	소속명	본사			
		사업소			
	주소	본사	(전	화번호: )	
		사업소		·뜨— /	
	대표자	성명	( ) -	,	
		생년월일			
	방사선 안전관리자	직위	성명		
		생년월일			
	처분예정 일시				
	처분예정 장소				
「원자력안전법」 제7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합니다.					
				년 월 일	
제출인 (서명			(서명 또는 인)		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귀중 					
1.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					
첨부서류		2.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			
		- 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표면방시		산출근거	
	4. 자체처분 방	법 및 예정 목적지		수수료	
	5. 자체처분으로	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		없음	
	6. 자체처분에 입증하는 자.	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위원회 =	l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	허용선량을 만족함을	
	7. 자체처분절치				
		처리	절차		
계획서 작성		접수 →	서류검토 <b>→</b> 통	지 글과 확인	
제출인 <u></u>		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기	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	안전기술원 제출인	